
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율을 명확화 하며, 체육시설의 범위 및 전용 사용료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스포츠클럽의 정의 조항 추가(안 제2조)
-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추가 및 변경(안 제8조)
- 사용료 반환 시 반환 기준일 추가, 수정 및 반환율 수정(안 제12조)
- 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(안 제19조)
- 체육시설의 명칭, 위치, 기능 추가 및 수정 (안 별표1)
-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, 선산체육관 전용사용료 신설(안 별표2)
-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요율 신설(안 별표7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
「스포츠클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신설된 상위법인 「스포츠클럽법」의 규정을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